

2025년 양구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 재공고

「양구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자립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『2025년 양구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』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8일
양 구 군 수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양구군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인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(예비)마을기업
- 지원규모 : 2개소 ※ 최종 선정 개소수는 사업비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신청기간: 2025. 9. 8. ~ 9. 30. ※ 휴일 제외
※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접수 시 신청 불인정

2. 지원사항
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인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(예비)마을기업

※ 지원제외 대상

- ① 2023년, 2024년, 2025년에 유사사업으로 보조금(국, 도, 군비) 지원을 받은 기업
- ②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업
- ③ 휴업 또는 폐업자(사실상 휴·폐업 포함)
- ④ 사치, 향락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크게 관련이 없는 소비성 사업
- ⑤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,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
- ⑥ 기업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
- ⑦ 국세, 지방세,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기업
- ⑧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○ 지원분야 : 사업개발 및 판로개척 등 사업활성화 분야 추진 지원

지원분야		세부지원내용
사업 활성화 분야	사업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브랜드(로고) 디자인 ■ 시제품 제작비, 예술·공연 기획 등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■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■ 사업개발 및 기술개발 컨설팅 및 위탁 연구 개발 ■ 특허·출원 등 인증 취득비 등
	판로 개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앱·홈페이지 개발 및 쇼핑몰 구축 개발 비용 ■ 시장 수요조사 ■ 온라인 마케팅 및 광고 비용 등 ■ 기업 홍보 및 판매를 위한 박람회 참가 비용

※ 지원제외 항목

- ① 사업개발 및 판로개척 등과 상관없는 자본적 경비(차량 등)
- ②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관리운영비·경상경비
 -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, 사무기기 등
 -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 등 운영경비 등
- ③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·장비 및 운영경비
 - 종사원 복지용,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내용과 무관한 사용 용도
- ④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스템의 구축 비용
- ⑤ 기타 사업개발 및 판로개척과 상관없는 분야로 판단되는 경우

업체 선정 시 주의사항

- 1) 업체 선정은 사업대상자가 적격업체를 직접 선정 및 계약체결
- 2) 선정업체 제작비용 입금 및 지원금 신청
 - 사업비 정산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
 - 자부담 및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 전용 통장 이용
 - 부가세 등 사후 환급금 및 사업비 초과분은 사업주 부담
- 3) 보조사업자는 제작업체 선정시 추진사업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제작업체 선정
- 4) 보조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(조부모, 부모, 형제 등)에 해당하는 제작업체 선정불가
- 5)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이거나 부정수급 제한업체 선정 불가

○ 지원범위 : 총사업비(부가가치세 제외, 공급가액)의 80% 범위에서 최대 10백만원까지

3. 대상자 선정
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 제외자 검토
- 지원대상자 선정은 담당부서의 실무심사 후 양구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*에서 최종 심의·선정 후 확정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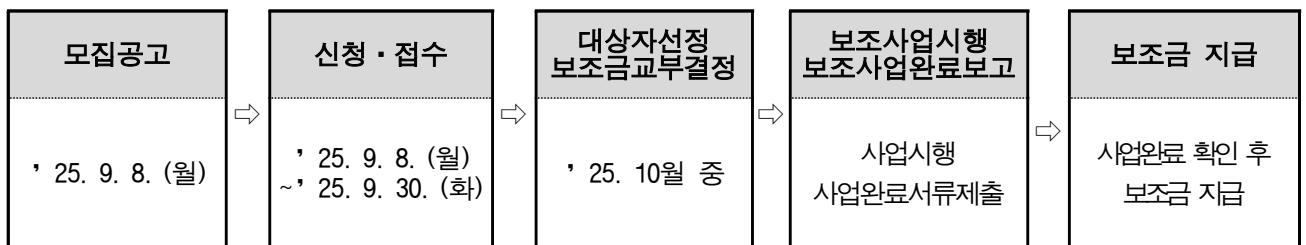
* 「양구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,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기능은 「양구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」에 따른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가 대신함

- 대상자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를 선정함

4. 지원선정 취소 등 유의사항 및 보조금 환수

- 2024, 2025년 국가, 도, 군 등으로부터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(중복지원) 지원 불가
-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이전에 시행한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, 사업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
- 사전승인 없이 지정기한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(선정통보 후 정해진 기간 이내 사업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)
- 국세·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체납 중인 경우 지원 불가
- 시정명령, 과태료, 관련 법에 따른 처분, 폐업,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결과물이 타 업체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- 보조사업자가 지원 후 1년 이상 해당 영업장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
(사실상의 휴·폐업 포함)
- 결과물을 목적사업 외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보조금 환수
-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 시 지원액 반환
 - ※ 지원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: 양구군 보조금 관리조례
- 보조금 지원조건 위반시 부정편취금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*
 - *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(2020. 5. 1.)

5. 추진 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6. 제출서류 및 접수처

제출서류	
구분	서류명
사업신청서	①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[서식1]
	②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서 1부 [서식2]
	③ 단체소개서 1부 [서식3]
	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[서식4]
	⑤ 성실 이행각서 1부 [서식5]
	⑥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 (해당시) 1부
	⑦ 사회적경제조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지정서, 인증서, 인기증 등) 1부
	⑧ 유급근로자 명부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※ 유급근로자 명부 제출 시 취약계층 고용 증빙자료 첨부
	⑨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2022, 2023, 2024년도) 1부
	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	⑪ 정관 1부
	⑫ 견적서(2곳 이상, 견적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) 각 1부 ※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, 세부견적서, 비교견적서 첨부
	⑬ 사회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증빙자료 ※ 지자체, 공공기관 등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 관련 증빙
	⑭ 기타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
	⑮ 대리인 위임장 (해당시) 1부 [서식6]
접수처	
- 양구군청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(제2본관 3층)	
접수 방법	
- 방문 접수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	

7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 발견시 보조금 교부 취소·환수 및 수사기관 수사의뢰·고발조치함
-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,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,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후 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관련 서류 제출(서울보증보험 춘천지점 발급)
- 반드시 공고문의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은 전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책임임

8.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경제체육과(☎480-7123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지원사업 점수배정표

기업(단체)명				평가일자			
평가항목		평점	평가기준		평가방법	점수	
총계(100)		100	항목		배점		
기업의 성장성 (40)	기업의 지속성	20	· 15년 이상		20	사업자등록 증명원 확인	
			· 10년 이상 ~ 15년 미만		18		
			· 5년 이상 ~ 10년 미만		16		
			· 5년 미만		14		
	기업의 성장 가능성	20	·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0% 이상 증가		20	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<small>*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15점 부여</small>	
			·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5% 이상 증가		18		
			·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0% 이상 증가		16		
			·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0% 미만 감소		14		
사회 가치 (60)	고용 창출 노력	20	· 11명 이상		20	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	
			· 8명 ~ 11명 미만		18		
			· 5명 ~ 8명 미만		16		
			· 5명 미만		14		
	취약 계층 고용 비율	20	· 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50% 이상		20	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및 관련자료	
			· 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30-50% 미만		18		
			· 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30% 미만		16		
			· 전체 유급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없음		14		
	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	20	· 지자체,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		20	관련자료 (보도자료 등)	
			· 지자체,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		18		
			· 지자체,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		16		
			· 지자체,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		14		
· 지자체,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없음			12				

※ 서류 미제출시 해당 배점 0점 처리 또는 기본점수 부여

※ 동점 기업(단체) 발생 시, 취약계층 고용 인원 수가 많은 곳을 우선하여 선정함